

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1. 개정이유

-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윤리감사관을 행정관리실장으로 변경함
(안 제3조제3항제1호)

3.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윤리감사관”을 “행정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. ② (생 략) ③ (생 략) 1. 법원행정처 <u>윤리감사관</u> , 사법등기국 장 2. (생 략) ④ ~ ⑦ (생 략)	제3조(구 성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----- <u>행정관리실장</u> ----- -- 2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4